LEGAL UPDATE

영업비밀·산업기술

Mar. 2024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따른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시행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가 금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중인 기술 또는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동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는 등 산업계의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는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이 점차 심화되며 미국을 필두로 자국의 첨단 기술을 국가 안보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책적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핵심·신흥기술 표준 전략」등을 발표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기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1] EU 역시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역외 유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기술 스파이·침탈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2023. 6. 화우 뉴스레터 참고[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제·개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 정책과는 별개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제도적 육성·관리 방안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국가전략기술육성방안에 관한 2022. 10. 28.자 발표 이후 [4] 2023. 3. 2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제정되고, 2023. 9. 22.부터 시행되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국가 차원의 관리 및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

[1]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36899

[2] https://www.voakorea.com/a/7296287.html

[3] https://www.hwawoo.com/newsletter/2023_06_28/230628_kor_t.pdf

[4] https://www.msit.go.kr/bbs/view.do?mId=113&bbsSeqNo=94&nttSeqNo=3182291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하고, 기술육성주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국가전략기술의 관리를 위하여 기술육성주체가 자신이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세부적인 방식 등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제9조), 세부적인 운영 방식을 정한「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가 금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과기정통부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2024. 3. 15.부터 본격 실시되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육성주체는 2024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2024년 5월 말경 확인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둘째,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받은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총 1,000억원 이상 및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유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은 현재 복수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의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해지게 되어, 상장 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셋째,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초격차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의 12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의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식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것으로 확인된 기술육성주체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우선 반영(제11조),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제12조),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지원방안(제13조), 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각종 지원(제27조)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한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 보유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각종 규제사항에 대비할 수 있음은 물론, 기술특례상장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의 수혜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제27조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존의 기술 보호 법제는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도상 중복되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화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 기술 대응 분야에서 기업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권동주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72
E. djkwo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김창권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78
E. ckkim@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이세정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079
E. sejunglee@yoonyang.com

이창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80
E. cwlee@yoonyang.com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